보수규정

□1993년 2월 4일 제 정 □2015년 3월 12일 개 정 정 □2000년 2월 2일 전면개정 □2015년 6월 11일 개 □2001년 2월 23일 개 정 정 □2015년 9월 25일 개 □2003년 2월 21일 전면개정 [2016년 3월 3일 개 정 □2004년 2월 26일 개 정 □2016년 3월 21일 개 정 □2004년 6월 28일 개 □2016년 9월 29일 개 정 정 □2005년 2월 25일 개 정 [2017년 3월 6일 개 정 □ 2006년 3월 3일 전면개정 □2017년 10월 24일 개 정 □2007년 3월 9일 개 □21018년 1월 8일 개 정 정 □2008년 2월 22일 개 정 정 □2018년 3월 16일 개 □2008년 12월 30일 개 정 □2018년 11월 9일 개 정 □21009년 6월 12일 전면개정 [2019년 3월 28일 개 정 □2011년 2월 22일 개 □2019년 7월 2일 개 정 정 □21011년 10월 26일 개 □2020년 3월 10일 개 정 정 □2012년 3월 13일 개 정 [21020년 12월 29일 개 정 □2013년 3월 7일 개 정 정 □2021년 6월 10일 개 □21013년 6월 28일 개 정 □2021년 12월 30일 개 정 □21014년 3월 7일 개 정 □2022년 3월 14일 개 정 □2022년 12월 27일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재직하는 상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수"라 함은 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연봉"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연봉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4. "수당"이라 함은 연차, 가족, 시간외序일근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당 및 직책수 당을 말한다.
-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 제4조(연봉의 산정) ① 임원의 연봉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3.10.〉
 - 1. 연봉은 〈별표 1〉에서 정한 전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직전 연도 성과평 가결과를 반영한 〈별표 4〉의 성과조정표 금액으로 한다.
 - 2. 제1호의 성과조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 ③ 계약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의 2(임금피크제) ① 진흥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인사규정 제38조의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 ③ 기타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연봉월액은 매월 지급한다.
 - ③ 수당은 매월 또는 필요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0.24.] 〈개정 2022.3.14.〉

- 제6조(보수지급 기준)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휴직 시에는 그 날이 속하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8.11.09.〉
 - ③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 ④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1/30로 계산한다.
 - 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을 1/12로 나눈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 ⑥ 징계 면직된 자가 그 면직의 부당함을 이유로 파면 무효 확정을 받은 때의 보수는 당초 파면일로 부터 복직발령일까지 연봉에 해당하는 보수만 지급한다.
- **제7조(휴가, 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휴가는 월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무급 휴가시에는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직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당해연도 연봉에 다음 각 호의 연봉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연봉을 지급한다.
 - 1. 진흥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장기휴양을 위해 휴직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외에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개정 2018.11.09.〉
 - 2.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 휴양(치료) 휴직 시 : 휴직기간 1년 이하 70%, 휴직 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50% 〈개정 2022.12.27.〉
 -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의2(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인사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연봉월 액의 80%를,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제3장 보수의 지급

- **제8조(연차수당)**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 ② 연차수당은 퇴직시를 제외하고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 ③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가족수당) ①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 인 이내로 한다. 다만,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또당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1. 배우자
 -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단, 취업중인 자는 제외)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5. 본 규정외 가족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가족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가족수당지급신청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당월에 해당하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한다.
 - ⑥ 담당부서는 가족수당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
- 제10조(시간외약간 및 휴일근무수당)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11조(자녀학비보조금) ①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해외 직무파견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자녀학비보조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 제12조(직책수당) ① 보직을 맡은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직자가 동일 또는 하위 직위를 겸직한 경우에는 유리한 쪽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 제13조(복리후생비)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수 있다.
 -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 2. 삭제 〈2020.03.10.〉
- ② 삭제〈2020.03.10.〉
- ③ 기타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인센티브 상여금)** ① 인센티브 상여금은 임직원의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03.16〉
 - ② 인센티브 상여금에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내부평가 인센티브가 있다.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하고, 내부평가 인센티브는 내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03.16.〉
 - ③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3.16.〉
- 제14조의2(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 제한) ① 인센티브 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환수한다.
 - ② 지급대상기간 중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본조신설 2020.12.29.]
- 제15조(기타 수당) 원장은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와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10.〉
 - 1. 출납수당은 회계담당부서에서 현금출납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2. 전산수당은 주전산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3. 명절휴가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퇴직금

- 제16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1. 퇴직
 - 2. 사망
 - 3. 임기 만료시
 - 4. 진흥원 해산시

제17조(지급 기준) 퇴직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년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8조(근속년수 계산방법) ① 근속년수는 발령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③ 직제개편 또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09.〉
- ④ 임직원의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및 무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육아 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급 시기) 퇴직금(명예·조기퇴직금을 포함한다.)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3.10., 2020.12.29.〉

제2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 2020.03.10.〉

②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삭제〈2020.03.10.〉

제22조(지급유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1/2범위 안에서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1. 연구보고서나 자료의 미제출
- 2. 제규정 및 규칙에 의한 반납의무의 불이행

제23조(사망퇴직시의 수령자) ① 사망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과 수령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권리양도 및 담보금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권리의 소멸) ①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제26조(명예퇴직금) ①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제17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금은 〈별표 3〉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7조(조기퇴직금) ① 인사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자에게는 제17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조기퇴직금을 가산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연봉월액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경영실적과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면개정 2009. 6.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2. 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2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3.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6. 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3. 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3.1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6. 1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9.2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3.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 3.2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개정 2016. 9. 2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3. 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 5. 2)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 10.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 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8. 3.1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1, 9)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3. 28)

- 제1조(임원 연봉 지급에 대한 특례) 〈별표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2017년도 연봉표에 2.6%를 인상한 연봉을 적용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연봉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7. 2)

- 제1조(임원 연봉 지급에 대한 특례) 〈별표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2018년도 연봉표를 적용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 3. 10)

제1조(임원 연봉 지급에 대한 특례)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 월 31일까지는 2019년도 연봉표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봉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 6.10)

제1조(임원 연봉 지급에 대한 특례) 〈별표 1〉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020 년도 연봉표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봉표 및 〈별표 4〉의 성과조정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1. 12.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5〉는 2022년 성과평가 대상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2. 12. 27)

제1조(임원 연봉 지급에 대한 특례) 〈별표 1〉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021 년도 연봉표를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봉표 및 〈별표 4〉의 성과조정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u>연봉표</u>

(단위: 원)

호봉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37,169,960	73,094,290	65,860,910	55,120,240	41,541,930	32,757,090	25,343,030
2		74,708,430	67,682,770	56,735,250	42,709,380	34,196,260	26,782,330
3		76,322,570	69,504,640	58,350,250	43,876,850	35,635,440	28,221,600
4		77,936,700	71,326,500	59,965,260	45,044,320	37,074,630	29,660,890
5		79,429,830	73,021,380	61,452,710	46,537,700	38,382,850	30,969,140
6		80,922,950	74,716,270	62,940,180	48,031,090	39,691,070	32,277,370
7		82,416,090	76,411,150	64,427,630	49,524,500	40,999,310	33,585,600
8		83,788,110	77,978,920	65,787,480	50,889,780	42,176,760	34,763,110
9		85,160,150	79,546,700	67,147,350	52,255,050	43,354,230	35,940,630
10		86,532,190	81,114,480	68,507,200	53,620,340	44,531,700	37,118,140
11		87,783,210	82,555,100	69,739,730	54,857,800	45,578,440	38,164,830
12		89,034,240	83,995,720	70,972,260	56,095,250	46,625,190	39,211,530
13		90,285,260	85,436,360	72,204,810	57,332,730	47,671,940	40,258,240
14					58,289,540	48,287,520	40,505,260
15					59,246,360	49,004,720	40,752,280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직책수당	800천원(본부장, 실장, 센터장), 700천원(단장), 600천원(팀장)
나.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30,000원/월 (단, 셋째이상 자녀의 경우 월 30,000원 추가 지급)
다.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월통상임금 _{주1)} × 1.5/209 × 근무시간
라. 출납수당	75,000원/월
마. 전산수당	50,000원/월
바. 연차수당	월통상임금 _{주1)} × 1.0/209 × 8시간 × 휴가미사용일수
사. 야간근무수당	월통상임금주1) × 2.0/209 × 근무시간

주1) 월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의함

〈별표 3〉 〈개정 2019.03.28., 2020.12.29.〉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기준급여(연봉월액 또는 월 평균임금)의 45% × 정년잔여월수 × 1/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기준급여(연봉월액 또는 월 평균임금)의 45% × 정년잔여월수 × 1/4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까지만 인정)

[※]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u>성과 조정표</u>

(단위: 원)

진	급		_				
호봉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	73,094,290	65,860,910	55,120,240	41,541,930	32,757,090	25,343,030
	2	73,632,330	66,468,190	55,658,570	41,931,080	33,236,810	25,822,790
	3	74,170,370	67,075,470	56,196,900	42,320,230	33,716,530	26,302,550
2	4	74,708,430	67,682,770	56,735,250	42,709,380	34,196,260	26,782,330
	5	75,246,470	68,290,060	57,273,580	43,098,530	34,675,980	27,262,080
	6	75,784,510	68,897,350	57,811,910	43,487,680	35,155,700	27,741,830
3	7	76,322,570	69,504,640	58,350,250	43,876,850	35,635,440	28,221,600
	8	76,860,610	70,111,920	58,888,580	44,266,000	36,115,170	28,701,360
	9	77,398,650	70,719,200	59,426,910	44,655,150	36,594,900	29,181,120
4	10	77,936,700	71,326,500	59,965,260	45,044,320	37,074,630	29,660,890
	11	78,434,410	71,891,460	60,461,070	45,542,110	37,510,700	30,096,970
	12	78,932,120	72,456,420	60,956,880	46,039,900	37,946,770	30,533,050
5	13	79,429,830	73,021,380	61,452,710	46,537,700	38,382,850	30,969,140
	14	79,927,530	73,586,340	61,948,530	47,035,490	38,818,920	31,405,210
	15	80,425,230	74,151,300	62,444,350	47,533,280	39,254,990	31,841,280
6	16	80,922,950	74,716,270	62,940,180	48,031,090	39,691,070	32,277,370
	17	81,420,660	75,281,230	63,435,990	48,528,890	40,127,150	32,713,440
	18	81,918,370	75,846,190	63,931,800	49,026,690	40,563,230	33,149,510
7	19	82,416,090	76,411,150	64,427,630	49,524,500	40,999,310	33,585,600
	20	82,873,430	76,933,740	64,880,910	49,979,590	41,391,790	33,978,100
	21	83,330,770	77,456,330	65,334,190	50,434,680	41,784,270	34,370,600
8	22	83,788,110	77,978,920	65,787,480	50,889,780	42,176,760	34,763,110
	23	84,245,450	78,501,510	66,240,770	51,344,870	42,569,250	35,155,610
	24	84,702,790	79,024,100	66,694,060	51,799,960	42,961,740	35,548,110
9	25	85,160,150	79,546,700	67,147,350	52,255,050	43,354,230	35,940,630
	26	85,617,490	80,069,290	67,600,630	52,710,140	43,746,720	36,333,130
	27	86,074,830	80,591,880	68,053,910	53,165,230	44,139,210	36,725,630
10	28	86,532,190	81,114,480	68,507,200	53,620,340	44,531,700	37,118,140
	29	86,949,190	81,594,680	68,918,040	54,032,820	44,880,610	37,467,030
	30	87,366,190	82,074,880	69,328,880	54,445,300	45,229,520	37,815,920
11	31	87,783,210	82,555,100	69,739,730	54,857,800	45,578,440	38,164,830
	32	88,200,220	83,035,300	70,150,570	55,270,280	45,927,350	38,513,730
	33	88,617,230	83,515,500	70,561,410	55,682,760	46,276,260	38,862,630
12	34	89,034,240	83,995,720	70,972,260	56,095,250	46,625,190	39,211,530
	35	89,451,240	84,475,930	71,383,110	56,507,740	46,974,100	39,560,430
	36	89,868,240	84,956,140	71,793,960	56,920,230	47,323,010	39,909,330
13	37	90,285,260	85,436,360	72,204,810	57,332,730	47,671,940	40,258,240
	38				57,651,660	47,877,130	40,340,580
	39				57,970,590	48,082,320	40,422,920
14	40				58,289,540	48,287,520	40,505,260
	41				58,608,480	48,526,580	40,587,600
	42				58,927,420	48,765,640	40,669,940
15	43				59,246,360	49,004,720	40,752,280

<u>성과조정 기준</u>

평가등급	S	А	В	С	D·E
가산 기준	6	4	3	2	0

<u>가족수당 지급 신청서</u>

아래와 같이 가족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담 당	팀 장	본부장*	원 장
	담 당	담당 팀장	담당 팀장 본부장*

※ 신청서 접수일 : 20 년 월 일

1.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부양가족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만)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실장 · 센터장 · 단장 포함

<u>자녀학비보조금 지원 신청서</u>

아래와 같이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결	담 당	팀 장	본부장*	원 장
개				

	소 속	(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신 청 인	직 위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7175114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대상자녀	학교명 및 전공	
	학 년	
	입 학 년 도	
신청 내역	학비 납부일	
	신청 금액	

첨 부 1. 가족관계증명서 (초회신청시에 한함)

1부.

- 2. 주민등록등본 (초회신청 및 변동사항 있을 경우에 한함) 1부.

3. 학교 발행 영수증 납부 사본

1부.

* 실장·센터장·단장 포함

연봉계약서

(갑)	대 표 자	
사용자	사업장명	(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을)	소속	직 급
근로자	성 명	

상기 당사자는 제반규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연봉계약적용기간]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은(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2조 [연봉]

- ① 을의(20)년도 연봉은 <u>금 원정</u>으로 한다.
- ② 연봉은 12분할하여 매월 정기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 제수당은 갑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지급함.
- ③ 연봉에는 중식보조비 월 100,000원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제3조 [기타]

- ① 을은 갑의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한다.
- ② 본인의 연봉금액을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경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③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갑의 제규정에 의한다.

20 년 월 일

갑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인)

을: (인)